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15 선고 2020가합6034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

담당변호사 성창재

피 고 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4. D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4. 15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,451,919원 및 그 중 243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0. 12. 19.부터, 9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. 15.부터 각 2021. 1. 23.까지, 2,753,600원에 대하여는 2020. 12. 19.부터, 1,132,062원에 대하여는 2021. 1. 15.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21. 2. 10.까지, 피고 B는 2021. 3. 22.까지 각 연 10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(1)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2020. 10. 2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(2)

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0. 26. 접수 제65105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(1)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D 사이에 2020. 10. 2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(2)

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0. 29. 접수 제66438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,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A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,451,919원 및 그 중
245,753,600원에 대하여는 2020. 12. 19.부터, 91,132,062원에 대하여는 2021. 1. 15.부터 각
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0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3. 피고 주식회사 A,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

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, B에 대하여 당초 2020. 12. 7.자 소장에서 ‘신용보증계약 상의 사전구상권에 기한 구상금으로서 333,000,000원의 지급’을 청구하다가 2021. 2. 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‘신용보증계약 상의 구상금 342,451,919원(= 2020. 12. 18.자 대위변제금 245,753,600원 + 2021. 1. 14.자 대위변제금 91,132,062원 + 대지급금 5,566,257원)의 지급’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,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확장된 9,451,919원 중 대위변제금 3,885,662원(이하 ‘확장된 대위변제금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(이하 ‘소송촉진법’이라 한다)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그러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“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” 적용되는바(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), 피고 주식회사 A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장된 대위변제금 3,885,662원 중 2,753,60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. 12. 19.부터, 1,132,06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. 1. 15.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. 2. 10.까지, 피고 B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. 3. 22.까지 각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,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한정석, 판사 김현희, 판사 강석규

별지